

대 법 원

2016. 4. 12. 원본영수	인
2016. . . 판결송달	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16두70 재심청구의 소

원고, 상고인 임그루
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-3 다세대주택 에이동 103호

피고,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
 소송수행자 강영민

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
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(정자동)
 대표이사 황창규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4재누275 판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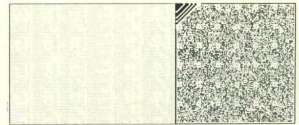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




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16. 4. 12.

재판장


대법관

김창석

김창석 


대법관

이상훈

이상훈 

대법관


조희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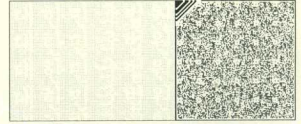
조희대 

주심

대법관

박상옥

박상옥 



정본입니다.

2016. 4. 12.

대법원

법원사무관 변건우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
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
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